

FSC 노동 핵심 요구사항 준수 성명서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FSC Core Labor Requirements

상호명: (주) 씨알푸드

우리는 FSC의 핵심 노동 요구사항과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행을 약속합니다.

7.2 조직은 아동 노동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7.2.1 조직은 7.2.2항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15세 미만, 혹은 해당 국가와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최소 연령 미만의 노동자(어느 쪽이든 높은 연령을 기준하여)를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7.2.2 해당 국가법이나 규정이 13세에서 15세 사이 가벼운 근로를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그러한 고용이 아동의 학교 교육을 방해하거나 그들의 건강이나 발전에 해롭지 않아야 한다. 특히 아동이 의무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아동은 정규 근무시간 중 등교시간 외에만 근무하여야 한다.

7.2.3 18세 미만의 아동은 해당 국가 법률 및 규정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을 제외하고 위험하거나 과중한 일에 고용되어서는 안 된다.

7.2.4 조직은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7.3 조직은 모든 형태의 강요 및 강제 노동을 없애야 한다.

7.3.1 고용 관계는 처벌의 위협없이 자발적이며 상호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7.3.2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강요 및 강제 노동을 내포하는 증거는 없어야 한다.

- 신체 및 성폭력
- 담보 노동
- 고용 수수료 지급 또는 고용 개시를 위한 보증금 지불을 포함하는 임금 원천징수
- 이동 및 움직임 제한
- 여권 및 신분증명 서류의 보관
- 정부 당국에 신고 협박

7.4 조직은 고용 및 직업에 어떠한 차별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7.4.1 고용 및 일자리 관행은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7.5 조직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실효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7.5.1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7.5.2 조직은 노동자를 위한 법과 규칙을 입안하는 노동조합의 완전한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7.5.3 조직은 노동자의 조직 구성, 가입 또는 지원과 관련된 합법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자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차별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7.5.4 조직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혹은정당하게 선정된 대표자와 단체 교섭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선의와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하여야한다.

7.5.5 단체 교섭 동의는 그들이 동석한 상태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위 사항에 대한 실행을 확인하며

작업하는 모든 인원은 본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동의합니다.

날짜 : 2023 년 01 월 02 일

담당자/직함 : 대표이사 선 철 응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성산단3로 43

주식회사 썬컴퍼니

서명 대표이사 선 철

